

# 윤리규정

2021년 12월 01일

(주) 알 에 프 텍

 (주)알에프텍	<h1>윤리규정</h1>	개정일자	2021.12.01
		개정번호	VER2

**제 1조 (목적)** 본 임직원 윤리 규정은 윤리 경영 정책을 임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적 의사 결정 기준과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회사의 경영이념을 구현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 알에프텍 전임직원 및 협력업체에 적용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1. 금품 :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강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향응 및 접대 : 식사, 음주, 가무 등의 접대 및 스포츠(골프 등),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 내외의 모든 관계자,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5. 신고자 : 금전 등의 수수 및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 고객 등을 말한다.
6.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수준 : 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 상호 부담 없음이 사회관습상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 4조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 시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사,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5조 (부당한 특혜나 청탁의 금지)**

1. 모든 임직원은 개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대우를 하지 않으며, 이를 통하여 평등한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6조 (정보 보호)** 모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회사 내부정보(고객, 협력업체 관련 정보 포함)를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7조 (공용 금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 정보, 자료, 기기 등을 외부의 일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주)알에프텍	<b>윤리규정</b>	개정일자	2021.12.01
		개정번호	VER2

**제 8조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통하여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거래를 상호간 이익이 되도록 하며 거래 행위는 계약과 일치해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철회)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거래에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9조 (협력업체와의 부당행위 금지)**

1.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공평하게 제공하며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악용하거나 폭리를 챙기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 금품 및 향응 등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

**제 10조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 금지)**

1. 모든 임직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당한 금품, 향응 및 접대 또는 편의제공을 받아서는 안되며,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출장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개인적 용무에 해당하는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3. 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관리팀에 신고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4. 업무수행상 불가피하게 부당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영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11조 (금전거래 행위 금지)**

1. 이해관계자와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금전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대차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12조 (금품, 향응 또는 편의제공 등을 수수했을 경우의 처리)**

 (주)알에프텍	<h1>윤리규정</h1>	개정일자	2021.12.01
		개정번호	VER2

1. 이상의 비윤리행위를 접하였거나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즉시 이를 소속 팀장이나 경영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을 수수한 임직원은 경영관리팀를 통해 부당이득 제공자의 소속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는 공문과 함께 수수한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하게 무형의 향응 및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이에 해당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경영관리팀에 신고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부당한 수수행위도 해당 임직원의 행위로 간주하며,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 제 13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1. 임직원은 회사의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이나 신체접촉행위를 비롯하여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법규와 사규(인사관련 사규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교육, 제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4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 임직원은 회사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법규와 사규(인사관련 사규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교육, 제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5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1. 전 임직원은 윤리강령준수서약서(별첨2) 및 윤리강령을(별첨2) 작성하고 서명한다.
  2.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3.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4.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 알리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과 협의한다.

 (주)알에프텍	<h1>윤리규정</h1>	개정일자	2021.12.01
		개정번호	VER2

5. 인터넷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위한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제 16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1. 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임직원은 누구든지 즉시 경영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직접 방문, 서면, 전자메일 및 사이버 신고센터 등 내부비리고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 경영관리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게 하지 않아야 한다.
3. 경영관리팀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는 회사의 이익과 법규의 범위 안에서 기밀사항으로 취급한다.
4. 임직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에 가담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경영관리팀에 스스로 제보 및 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 할 수 있다.
5.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위반사항은 상별규정에 의거 징계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